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제7조의2제2항 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	차안정감·소방정감	차안감·소방감	경무관·소방준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35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30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26호봉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3호봉	12호봉	12호봉	12호봉	9호봉	5호봉	중위 2호봉	20호봉	12호봉	12호봉	5호봉	2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 월봉급액을 말한다.